

외국논문

사진의 촬영·공표를 둘러싼 인권문제

村上孝止

일본신문협회 심사실장

본고는 일본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신문연구」 2월 호에 게재된 논문으로, 본지 「언론중재」 이번호의 특집 주제인 「보도사진저널리즘과 시민의 권익」 과 연관되어 그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편집자 주

사진주간지의 난립기를 맞아, 특히 작가 히사시씨와의 사이에 소문이 났던 여성이 「숨어서 몰래 찍은 사진을 잡지에 공표한 것은 초상권침해」 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사진과 인권과의 관계가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진의 촬영·공표와 인권과의 관계가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취급되어 왔으며,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개관해 본다.

I. 사진촬영을 둘러싼 문제

1. 일본에 있어서의 사례

사진과 인권의 관계는, 일본에서는 경찰관이 증거채취를 위한 사진을 찍는 것을 방해해서 체포된 피고측이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초상권을 들고 나와 형사재판의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을 통해 밝혀지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셔터를 누르는 것만으로 개인의 용모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행동의 일부를 극히 용이하게 그리고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영상으로써 기록한다. 사진이 갖는 이러한 이점은 보도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데 이와 꼭 같은 이유로 경찰의 범죄조사에도 많이 이용된다. 경찰관에 의한 촬영은, 초상권의 침해를 내세우는 피고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하급심에서 몇 개 있는 후, 1969년 12월 24일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이 대법원판결은 데모행진의 위법상황을 촬영하던 경찰관이 데모대원으로부터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이른바 교토부학연 사건에 관한 것으로 피고측의 초상권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누구든지 그 승낙 없이 함부로 그 용모·자태를 찍히지 않을 자유를 갖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두고 초상권이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적어도 경찰관이 이유도 없으면서 개인의 용모 등을 촬영하는 것은 헌법 제 13조(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의 취지에 반하며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판시하고, 덧붙여 촬영 당하는 본인의 동의나 재판관의 영장 같은 것이 없더라도 경찰관에 의한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로서는 ① 현재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범죄가 진행된 후

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더구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③ 또한 그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행해졌을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제시 했다.

일반사인이나 보도기관이 찍은 사진은 공표됨으로써 처음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으나 경찰관에 의한 촬영은 공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촬영 당한 사람은 촬영 당한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까닭에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 218 조 2항(신체의 구속을 당하고 있는 피의자의 지문 또는 족형을 채취하고 신장 또는 체중을 측정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를 발가벗기지 않는 한 전항의 영상에 의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등과의 관계로 보아 경찰관의 촬영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법원판결은 일반적으로는 초상권을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나, 판결은 미묘한 표현으로 「함부로 용모·자태를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초상권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보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의 하위심판결에서는 초상권이란 말을 피하고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라는 말이 사용되게끔 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경찰관이 관련된 판결은 거의 없었다. 대법원판결은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했기 때문에 경찰관에 의한 촬영 이외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오랫동안 의문으로 되어 있었다. 보도의 경우 앞으로 카메라를 대고 싶은 사람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큰 일이고, 촬영한 필름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의 침해로 이유로 노광을 요구당하는 일이 생겨도 큰 문제이다.

札幌(찰황)고등법원은 1977년 2월 23일 노동조합원의 위법행위를 8밀리 카메라로 촬영한 당국측 현지 대책원에게 조합원이 폭력을 휘두른 사건에서, 일반사인 피촬영자의 승낙 없이 용모·자태를 촬영하더라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을 명시했다. 이 요건은 정당한 보도목적에 대한 취재에 대해서도 언급, ① 사진촬영의 목적이 정당한 보도를 위한 취재, 정당한 노무대책을 위한 증거보전, 소송등에 의해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증거보전 등 사회 통념상 시인 될 수 있는 정당한 것이고, ② 촬영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③ 또한 그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졌을 때 등 세가지를 들었다. 다음은 제일차 성전데모 때(성전국제공항건설을 반대하는 데모) 데모대원이 三理塚(삼리총)어료목장 개장식 전의 회장에 난입한 장면을 아마추어 카메라맨이 사진 콘테스트 출품을 위해 촬영, 이것이 법정에 증거로서 제출되어 그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동경고등법원은 1981년 3월 31일 데모 대원들은 「일반사인으로부터 용모·자태를 사진촬영 되도록 승낙하거나 사진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방기하기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사인으로부터 사진 촬영될 만큼의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은 오히려 소기의 효과의 일단을 올렸다고도 할 수 있는 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광경을 찍을 경우 ① 사진촬영의 목적이 사회 통념상 시인 될 수 있는 정당한 것이었으며, ② 방법이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것일 때는 허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촬영의 대상이 된 사건은 신문의 입장에서 보면 뉴스보도의 대상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경우 수사목적의 촬영에서는 불가결 요건으로 되었던 「사진촬영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제거되어 있는 점은 주목된다. 일반사인의 촬영이나 보도기관의 촬영은 비상식적인 목적이나 방법에 의한 촬영이 아닌 한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없더라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의 침해는 되지 않으므로 보도기관이나 일반사인이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한도를 넘어선 부당한 촬영방법으로 규정된 예를 판례 중에서 찾아보면 입욕중의 나체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라든가, 야간에 지반거리에서 대모참가자의 얼굴을 노려 후레쉬 촬영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판례로 나와 있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범죄법 1 조 23 호에 규정하고 있는 훔쳐 보는 행위와 비슷한 촬영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2. 독일에 있어서의 사례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해 무단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도록 되어 있으나 초상권을 최초로 만들어낸 독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서터의 공격에 대해 초상권을 설정하여 대항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전세기미에 나왔었다. 카메라의 명기를 잇달아 만들어 내어 카메라 왕국의 명예를 내세웠고, 인쇄면에서는 구텐베르크 이내의 전통을 자랑했으며, 덧붙여 법률면에서는 사전에 깔끔하게 성문법을 준비한 독일에서 사진의 촬영·공표를 둘러싼 법률문제에 유력한 해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다궈이 고안한 최초의 암상카메라가 팔리기 시작한 것은 1839년 8월 19일인데, 초기의 카메라는 장시간의 노광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카메라 출현 후 10수년간은 초상사진이 중심이었다. 이즈음 이 인쇄기술을 구사하여 초상의 복제품이 초상본인의 의향에 관계없이 널리 퍼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에 대항하여 1876년에는 빠르게도 무단복제로부터 사진을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 되었다. 카메라가 출현한 지 약 40년 후에는 고감도의 건판필름과 핸드 카메라가 개발되어, 1890년대에 들어서자 숨어서 몰래 사진을 찍은 전문카메라도 출현, 해수욕장의 누드부인을 몰래 찍어서 만든 사진엽서를 파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베를린항소원의 가이스너 판사는 1895년 「초상권」을 설정하여 이에 대항해야만 한다고 제창하면서 「사람은 동의 없이 자기의 초상을 촬영 당하거나 그것을 무단으로 복제·공표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단 촬영되었을 때에는 카메라를 열어 감광판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선 권리자의 자위를 인정하고 예술가가 기억을 더듬어 초상화를 그리는 것도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로 해야 한다는 등 지극히 극단적인 주장을 폈다. 이 가이스너 설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동판사의 제창이 있는 수년후인 1898년 7월 30일 밤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임종하는 자리에 2명의 사진사가 창을 뛰어넘어 들어가 마그네슘을 터뜨려 초상을 찍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초상권설정의 기운이 급속도로 높아짐과 동시에 이 권리의 내용을 동의 없이 공표 당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하느냐 아니면 촬영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독일법조계에서 대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수년간 계속되다가 1904년의

제 27 회 독일법률가집회에서 초상권의 보호는 공표에 한해야만 한다고 결의 함으로써 종지부를 적었다. 1907 년에 제정된 「조형미술 및 사진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은 이 결의에 근거하여 22 조에서 24 조 까지에 초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초상권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초상이 초상사진, 초상화 등에 고정된 이후부터 이 권리의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 초상권논의의 발상이 되었던, 수사목적에 의한 얼굴사진의 촬영에 대해서도 독일에서는 저작권법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있다. 독일법조계의 논쟁을 거쳐 성문법 속에 탄생을 본 초상권의 사고방식은 그 후 주로 유럽대륙의 각국에 널리 퍼져 독일의 규정을 본 딴 조문이 저작권 관계의 법률 속에 자리잡고 있다. 초상권을 무단으로 공표 당하지 않는 권리로서 설정한 독일에서도 그 후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적 영역에 있어서 모르는 사이에, 더구나 그 의지에 반해 공표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히는 것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판례가 확립되었다. 허락이 없는 초상의 작성과 공표의 양자 모두를 금지하는 민법개정안의 계획도 전해지고 있다. 한번은 법률가집회에서 결론을 냈으나 소형경량화되고 성능도 비약적으로 향상된 카메라가 대중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결론도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미국에 있어서의 사례

신문을 중심으로 한 매스컴이 극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사진의 촬영 · 공표의 문제도 매스컴 대 인권이라는 보다 넓은 테두리 속에서 고찰되어 왔다. 미국의 신문은 1860 년에는 387 지 148 만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1898 년에는 2,580 지, 2,880 만부로 거대화되었는데 그것은 동시에 대중지, 오락지 등의 변화이기도 했다. 예로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말은 범죄나 참사, 이혼문제, 스캔들 등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시기의 신문의 대명사로 되어 있으나 이 명칭의 유래가 되고 있는 월드지의 만화 옐로우킷드의 연재가 시작된 것은 1889 년이었다. 신개계에 이러한 경향이 횡행했던 1890 년 에워랜과 브랜다이즈의 2 명의 법률가가 유명한 논문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발표했다. 논문은 당연히 신문의 보도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에 간섭하는 경향이 근대신문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중에는 언론의 자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 프라이버시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공정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 그 이후의 판례가 입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 논문 속에서 사진문제는 큰 비중으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사진술의 발달로 숨어서 몰래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대에는 계약이나 신학의 법리가 적당치 않으므로 불법행위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사진에도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초상권논쟁에서는 촬영의 취급이 하나의 쟁점이었으나 워랜과 브랜다이즈의 논문은 모르는 사이에 사진을 찍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하나의 현실로서 인정, 거기에서부터 의논을 전개 했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갔다. 이 논문이 발표된 후 약 반세기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프라이버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보호되어야만 할 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양태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사건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 ① 원고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격리된 사생활을 보내고 있는 데 침입하는 것.
 - ② 원고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
 - ③ 원고에 관하여 어떤 사실을 공표하는 일로 해서 타인의 눈에 본래의 원고의 모습과 다른 인상을 주는 것.
 - ④ 이름이나 초상과 같이 원고에게 있어서 사적인 것을 피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
- 입법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도 있다. 최초의 것은 1899년의 캘리포니아주의 것으로 공직에 종사하는 사랑 이외의 초상을 사전에 승낙서를 받지 않고 신문등에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1915년에 폐지되었다. 이어서 뉴욕주가 1903년 법 속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법 또는 뉴욕민권법으로 불렸는데,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초상·회화를,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목적 또는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며, 기본적인 입장은 독일의 초상권규정과 유사하다 제한의 대상이 주로 사진관계에 국한되고 있는 것은 입법의 계기가 된 사건의 성질에도 달려있으나, 사진이 프라이버시 문제의 하나의 초점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판례상 사적 영역에 간섭하는 것과 같은 촬영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 AP 통신의 명예훼손 메뉴얼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카메라맨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무더운 날에 관한 기사를 장식할 사진을 찾고 있던 신문 카메라맨이 자기집 현관에 앉아 있는 부인의 사진을 촬영했다 그녀는 간단한 가정복을 입고, 머리칼에는 파마용 클립을 감고, 발에는 가죽 끈의 샌들을 신고 있었다. 사진은 부인의 집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주차하고 있는 차 속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소했다. 법정은 신문의 각하동의를 부정하면서, 사진에 찍힌 장면은 「특별히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판시하고, 「사람의 눈을 피한 촬영」과 「당혹시키게 만드는 포즈」의 사진의 공표에 의해 품위의 한계는 짓밟혀 넘어섰다고 말했다. 어떤 부인이 아이 두 명을 데리고 군의 박람회에 가서 깜짝 놀라게 하는 유희장에 들어갔다. 신문 카메라맨이 제트기류가 그녀의 드레스를 불어 올리고 있는 순간 사진을 촬영했다. 그녀는 이를 제소했으며, 알라바마주 대법원은 손해 배상을 명한 하급심판결을 지지했다. 촬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선 사진의 공표가 문제가 된 다음 소급해 올라가서 촬영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II. 공표를 둘러싼 문제

1. 일본에 있어서의 판례

사진에 의한 피해는 통상 사진이 공표됨으로써 일어난다. 촬영되고 공표된 본인이 그것을 승낙하고 있으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은 어쨌든 간에 적어도 함부로 촬영·공표 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촬영·공표에 대한 승낙은

어떠한 것이 아니면 안 되느냐 또 어떠한 것이면 족한가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유력한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동경 온천에 입욕중인 회사원이 촬영되어 사진잡지에 공표된 일로 해서 사회적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제소한 동경온천사건에서는, 촬영자가 욕실에서 옷을 입고, 사진통신사의 카메라맨 입을 나타내는 완장을 하고 있었고, 촬영된 입욕객은 카메라맨이 자기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1956년 8월 8일 동경지방법원은 「자기의 자태가 촬영되었을 때에는 공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표까지도 포함하여 승낙을 준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승낙은 명시인가 묵시 인가를 불문하고 촬영하는 측이 보도기관의 카메라맨 입을 명시하고 촬영 당하는 측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공표까지도 포함해서 승낙을 한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강하다.

뉴스영화 「적자선」의 촬영에 협력한 버스 안내양이 태사에서 그녀의 표정에 대한 평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한데 불만을 가지고 초상권의 침해로 제소한 「적자선」사건에서 광도지방법원은 1962년 2월 27일 「원고가 기대한 만큼의 편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여하들 원고는 촬영 승낙했고 피고의 기도가 공공을 위한 보도였을 뿐 아니라 원고 개인의 자태, 용모를 소개,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초상의 사용이 위법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물리쳤다. 속여서 협력을 구한 것이 아니면 기대에 반하는 취급을 당했어도 그것만으로 초상권의 침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마스크 사건은 아니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의 무단공표가 문제된 사건도 있다.

신용금고간부를 규탄하는 전단 수백배가 금고 본 지점 직원에게 배포된 다음 동문서 설명석상에 여직원과의 불륜관계를 상상케 하는 몰래 찍은 현장사진이 제시 공표되었기 때문에 사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전 금고 간부가 제기한 전단배포·사진제시 사건에서 동경지방법원은 1974년 8월 13일 「이것은 언뜻 보아 남녀간의 비사를 상상시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대중의 눈에 창피한 사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사진이 공표되는 것을 승인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서 그 제시는 허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결은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이다.

2. 외국에 있어서의 사례

일본의 경우 판례가 적어 공표를 둘러싸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독일, 미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어 일본에서 사진의 공표문제를 생각하는 경우에 큰 참고가 된다. 이 가운데에는 신문·통신사의 사진부등에서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 독일에서는 사람의 초상을 포함한 사진의 공표는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초상권이 보도의 자유나 전람회의 필요성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① 현대사의 영역에 속하는 인물의 초상.

- ② 풍경 또는 그 밖의 정경에 부수하여 사출된 화상 .
- ③ 집회, 행렬 및 이와 같은 행사에 참가중인화상 .
- ④ 촉탁에 의하지 않고 작성된 초상으로, 예술상의 고상한 목적이 반포 또는 전람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대사의 영역에 속하는 인물」은 일본의 경우 「유명인」, 미국에서 말하는 「공적 존재」 등을 모두 묶은 개념에 해당한다. 촬영을 초상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대사의 영역에 속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독일에서도 사적 영역 내에서의 그러한 인물에 대한 숨어찍는 촬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소비에트 귀환자이고 섬유상을 경영하는 한 부인에 대해 사진주간지 「퀵」이 몰래 찍은 사진을 반 페이지 크기로 게재, 이름을 들어 비난했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보이코트 운동에 박차가 가해져 막대한 손해를 입은 그녀는 손해배상 의무의 확인을 구했다. 「그녀는 확실히 현대사의 영역에 속하는 인물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적영역 내에 모르는 사이 더구나 공표의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 당하는 것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에 대한 판결 내용이다. 독일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촬영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표가 문제되었을 경우 소급해 올라가서 촬영도 문제가 되는 관계인 듯하다. 미국에서는 판례의 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허락이 없는 사진의 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은 많은 판사나 학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 ① 사진이 광고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경우, 특히 그 사용이 뉴욕 프라이버시 법에 관계되는 경우, 원고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
- ② 사진이 신문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허구의 기사와 관련 지어져 사용된 경우는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 된다.
- ③ 사진이 시사뉴스 또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의 관심사에 해해서의 기사와 관련 지어져 사용되는 경우는 어떠한 회복도 없다.
- ④ 사진이 교육적이고 견문을 넓히는 성격의 피쳐스토리 속에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해 구제는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더구나 상반되는 판례를 이 네 개의 원칙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AP 통신의 명예훼손 메뉴얼은 앞에서 예거한 2개 외에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다. 몇 군데의 법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은 식별되더라도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만일 카메라가 뉴스와는 관계가 없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클로즈업하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되었다고 판결하고 있다. 앨라배마 주에서 한 어린이가 자동차사고로 부상했는데, 그 아이가 옮겨지기 전에 신문이 사진을 찍어 게재했다. 그것은 스포츠 뉴스였다. 20 개월 후에 어떤 잡지가 그 사진을 기사의 일러스트에 사용했다. 그 잡지는 피소되었는데, 법정은, 아이는 사고로부터 20 개월 후에는 이미 「뉴스 속에는 있지 않다」고 판결, 잡지사는 패소했다.

III. 일본의 현상

촬영·공표에 대한 유의점으로 일본의 신문사등에서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뉴스성이 없는 가두풍경이나 풍물 등의 촬영 시에는 완장 등을 돌려 촬영 당하는 측이 촬영목적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스러운 표정을 찍기 위해서 미리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렌즈를 대는 경우에도 몰래 찍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촬영 당한 사람이 촬영 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진이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의 사진이나 표정이 나쁘게 찍힌 사진 등을 공표한다면 문제가 있다.
- ③ 비행소년의 교도장면 등은 비록 뒷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보존사진을 피쳐기사의 장식 등으로 쓰는 경우는 촬영된 사람의 상황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유용에 의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와는 다른 사용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배려가 필요하다.
- ⑤ 지면에 게재한 사진을 외부에 내는 경우 신문사가 촬영한 사진은 그 신문사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정도에는 게재되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그것이 외부에 팔리는 경우 양해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특히 얼굴사진등에서는 본인의 양해를 얻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다.